

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신청서

신청인	성명(한글)	(한자)
	생년월일	전화번호(휴대폰)
	소속	직위(직급 등)
	주소	

최종 재산등록(변동) 신고기준일	
유예신청사유	<input type="checkbox"/> 재외공관 근무 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주재사무소 근무 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파견 <input type="checkbox"/> 휴직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)
유예신청 재산신고유형 및 연도	<input type="checkbox"/> 정기변동 신고 <input type="checkbox"/> 의무면제신고 년부터 년까지 신고분 (회)

「공직자윤리법」 제6조의3 및 「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」 제3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변동사항 신고의 유예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귀하

유의사항

- 구비서류: 유예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인사발령사항)
- 신고유예기간 중이라도 유예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유예시기가 소멸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최종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.